

□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-4429호(2007.10.12)

질 의	답 변
입원 중 정신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곤란한 다른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으나 해당의료기관 인력·시설·장비로는 치료가 곤란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진료를 의뢰한 경우 청구방법 및 본인부담금 등을 어떻게 적용하나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구기관 : 외래진료 의뢰받은 기관 - 청구명세서 : 외래명세서(상해외인란에 “E” 표기, 명세서여백에 다른 의료급여기관 정신질환자가 진료의뢰건임을 명기) - 수가 : 외래수가 - 종별가산율 : 외래진료 의뢰받은 기관 - 본인일부부담금 : 입원본인부담률

□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질병정책팀-3922(2007.10.24)

I. 현 사업개요

□ 목 적

-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되어 가계의 사회·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·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(본인부담금)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·심리적 안녕을 도모
 - ※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('00)으로 한시적 의료보호에서 탈락하는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, 혈우병, 근육병, 고셔병 4종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('01)

□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질환

- 지원대상자 :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21천명
 -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는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·재산·금융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 기준 이내에 해당하는 자

구 분	가구기준	소득기준	재산기준
일 반	환자가구	300%	300%
	부양의무자가구	500%	500%

- ※ 혈우병, 고셔병, 파브리병, 뮤코다당증은 소득 및 재산기준을 약간 상향 적용
- ※ 소득과 재산기준은 "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" 상 최저생계비 및 최고재산액 적용

- 지원대상 질환 : '07.10월 현재 근육병, 혈우병 등 111종
 -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지정 대상질환 중 정부의 재정부담 수준을 감안하여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으로 선정하여 지원 추진

□ 의료비지원 내역

- 근육병, 혈우병 등 111개 질환군에 대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진료비 전액 지원
- 근육병, 다발성경화증 등 5종에 대하여는 간병비, 호흡보조기(산소호흡기) 대여료, 보장구 구입비 지원
 - ※ 총 사업비는 지방비(50%)를 포함하여 780억원 규모이며, 본인부담금 진료비는 약600억원 수준임

□ 의료비지원 절차

-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환자가 지원대상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은 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우선 납부하고, 그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여 환급
- 환자의 고액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(또는 보증회사)이 보건소에 의료비를 직접 청구하는 지급보증제도도 시행

II. 의료비지원 사업 제도개선 계획

□ 개선사유 및 내용

- 환자의 이용편리 도모,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자격관리 강화 등을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업무 건보공단 위탁 · 시행
 - ※ 위탁 전 · 후 의료비지원 절차 및 기관별 업무범위 : 붙임 참조
- 위탁범위는 의료비지원 사업 지침상의 본인부담금 진료비, 간병비, 호흡보조기 지원 등의 업무임

□ 시행시기

- '08.1.1부터 공단에서 예탁금을 위탁 · 운영하되,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진료비(본인부담금) 직접 청구는 '08.4.1부터 시행
 - ※ '08.3.31까지 진료비는 보건소가 지급금액을 산정한 후 건보공단에 지급을 의뢰하고, 간병비 · 호흡보조기대여료 등은 지원대상자가 공단지사에 직접 청구

□ 진료비(급여 본인부담금) 지원절차 및 지원범위

- 진료비지원 대상자의 급여 본인부담금 지급을 현행 선지불 후환급 형태에서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체계로 개편
 -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자의 지원대상 질환에 대한 총진료비(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포함)를 진료비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심평원에 청구
 - 건보공단은 심사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우선 가지급하고 심사후 정산 처리
- ※ 진료비청구명세서변경("H"코드 신설) 및 칼럼 추가, 지원대상자 등록증 발급, 자격조회 및 가지급 지원 프로그램 등 구축
- ※ 간병비,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은 환자가 직접 공단지사에 청구하여 지급 받음

- 진료비지원 대상 진료내역 범위는 지원대상 질환에 대한 진료에서 입원은 동일 진료과목, 외래는 같은날 동일 의사진료분으로 변경
 ※ 입원중인 환자의 전과는 합병증을 제외하고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□ 기타 행정사항

- 진료비청구명세서 변경고시('07.11) 및 칼럼신설('08.3)
- 지원대상자 자격조회, 가지급시스템 등의 전산프로그램 구축('08.3)
- 제도개선에 따른 순회설명('07.12월 중 예정)
 ※ 간담회, 교육, 정기모임 등을 통한 제도개선 안내 요청시 수시 설명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정책팀(031-440-9115~8, 정종갑, 조우미)에 문의

〈첨부 1〉

위탁 전 · 후 기관별 업무처리 범위

구 분	현 행	위탁 후
보건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환자등록 · 퇴록 등 자격관리 ○소득 · 재산조사 의뢰(동사무소) ○의료비 접수 · 심사 · 지급 ○간병비,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급 ○의료비 정산 및 결산, 실적관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환자등록 · 퇴록 등 자격관리 ○지원대상자 등록증 발급 ○소득 · 재산조사 의뢰(동사무소)
의료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환자진료 ○진료영수증 발급 및 수납 ○지불보증제도(보건소로 청구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환자진료 ○진료비용 공단 직접 청구
건강보험공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등 과 · 오납금 정산 환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자격조회 시스템 구축 ○국고보조금 예탁 관리 ○환자 본인부담금 가지급 ○의료비지원 정산 · 환급 ○사례관리(진료내역 확인 · 심사) ○간병비,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급 ○예산집행 실적관리 ○의료비지원 관련 통계 제공
환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등록신청, 진료비 청구(보건소) ○보건소로부터 진료비 환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등록신청 (보건소)

〈첨부 2〉

위탁 전 · 후 의료비 지급 절차도

